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9-05-18 규칙 제 337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디자인업무지원 요청)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디자인업무 지원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디자인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당연직 위원)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과 공공디자인 관련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디자인 심의·자문 대상) ①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 별표1의 공공디자인 심의·자문대상 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 심의전에 우선적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문한 결과 심의가 필요없다고 판단한 사업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 및 건축설계 경기 등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디자인 심의·자문 요청시기)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 심의·자문 요청은 디자인 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6조(디자인 심의·자문 요청방법) ① 제4조에 따른 디자인 심의·자문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과 심의·자문신청서를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 일정계획 등)
2. 디자인 계획(디자인 개발방향, 사업대상지 및 사례분석, 디자인컨셉 등)
3. 디자인 시안(기본도면,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4. 관리운영계획 및 과업수행계획 등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 회의에 올리는 안건은 회의개최 10일 전 까지 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심의의 유형) ① 심의결과는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로 한다.

② 재심의 안건은 심의조건을 갖추어 다음번 개최하는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자문의 유형) ① 자문 안건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자문에 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면 서면으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6조에 따라 서면으로 자문에 응하는 위원에게는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의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른 소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안전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경기도 공공디자인자문단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